[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6호]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문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24.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2.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공공부문)「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기타 관계 부처 협의 확정기관

○ **(민간부문)「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① **(대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②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③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능력중심 고졸자 채용, 고졸근로자 진학· 국가자격증 취득 등 후학습에 대한 지원 우수기업

*선취업: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고 특화과정, 인문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후학습: 재직자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 P-Tech, 야간·계약학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학점취득(학위취득), 국가자격증 취득 등

나. 신청제한

○ **(공통)**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법 위반 명단 공표 사업장 등은 신청 불가 ☞ (참고1)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①근로기준법 ②최저임금법 ③남녀고용평등법 ④임금채권보장법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⑥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⑦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⑧근로복지기본법 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⑫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⑮산업안전보건법 ⑯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⑰고용보험법 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⑲중대재해처벌법

다.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 기관 및 '21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간 경과)

○ **(재인증) '22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라. 신청방법

○ **(제출기간)** 2025. 3. 24.(월) ~ 5. 22.(목)

○ **(제출서류)**

- (공공부문) 신청서(소정양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심사 보고서(소정양식) 5부, 관련 증빙서류 1부
- (민간부문) 신청서(소정양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심사 보고서(소정양식), 관련 증빙서류

○ **(접 수 처)**

공공부문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이메일 접수] best-hrd@krivet.re.kr
  [우편 접수]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1112C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 인증사업 담당자
- (문의처) 044-415-3941
- 신청서 서식 및 세부사항 상세안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www.krivet.re.kr > 소통 > 알림·채용

민간부문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HRD4U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hrd4u.or.kr/hrdcert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첨부4.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으로 문의)
- 신청서 서식 및 세부 사항 상세안내
  - HRD4U(www.hrd4u.or.kr)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 사업소개

○ **(유의사항)**

- 신청서는 기한 내 접수가 원칙 (마감 이후 제출 불가하며 접수마감기한 초과하여 제출한 기관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제출 기간 경과 후 임의 변경 불가
- 온라인 및 메일 접수는 '25. 5. 22.(목) 18:00까지,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하며 마감일 이후 접수 분은 폐기 처리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공부문:** 이메일 및 우편(인쇄본) 두 가지 모두 제출
[이메일 제출] ① 사업신청서, ② 심사보고서 PDF 및 한글파일
[우편 제출] ① 심사보고서 5부, ② 증빙자료 1부

※ **민간부문:** 온라인으로만 제출

3. 심사기준

가. 심사 기준

○ **(공공기관 · 대기업 ·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역량** 및 **우수성 심사** ☞(참고2), (참고3)

① **인적자원관리**(HRM): 인사관리체계 수립, 채용·인사평가·배치·승진 등 인사제도 운영, 성과목표 관리, 역량개발 제도 운영 등

② **인적자원개발**(HRD): 인재육성계획, HRM과 HRD 연계 정도, 교육훈련 참여도·교육훈련 투자 정도, 인적자원개발·개인 역량개발 평가·피드백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고졸 근로자 고용, 후학습 지원, 후학습 후 처우개선(인사, 급여), 선취업-후학습 장려 문화, 선취업 근로자 육성 등

나. 심사 시 우대사항

공공부문 심사 시 평가 우대사항

①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고용부)
② 가족친화 인증기관('22~'24년, 여가부)
③ 일학습병행 참여기관(HRD-net (www.hrd.go.kr)에 등록된 일학습병행 승인기관)(고용부)
④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기관
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관
⑥ 기타 인사에 관한 정부시책 반영 여부

민간부문 심사 시 평가 우대사항

분 야	가점 내용		비고
대기업 (12개)	① 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 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 숙련기술 참여모범사업체(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선정기업) ④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⑥ 여가친화인증사업 인증기업 ⑦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기업	+3점	인적자원관리(HRM) 가점 누적
	⑧ 가족친화인증기업 ⑨ 일학습병행 실시기업 ⑩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⑪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⑫ 기업자격 정부인정 사업 참여기업	+5점	
중소기업 (15개)	① 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 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 숙련기술 참여모범사업체(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선정기업) ④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⑥ 기능한국인 운영 기업(기간 제한 없음) ⑦ 여가친화인증사업 인증기업 ⑧ 능력개발 클리닉 참여기업 ⑨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기업	+3점	
	⑩ 가족친화인증기업 ⑪ 일학습병행 실시기업 ⑫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⑬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⑭ 기업자격 정부인정 사업 참여기업 ⑮ NCS기반 기업 활용 우수기업	+5점	
선취업-후학습 (17개)	① 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 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 숙련기술 참여모범사업체(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선정기업)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⑤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⑥ 노사문화우수기업 ⑦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⑧ 기업자격 정부인정 사업 참여기업 ⑨ NCS기반 기업 활용 우수기업 ⑩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⑪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⑫ 기능한국인 운영 기업(기간 제한 없음) ⑬ 여가친화인증사업 인증기업 ⑭ 능력개발 클리닉 참여기업 ⑮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기업	+2점	택1, 최고 가점5점
	⑯ 일학습병행 실시기업, ⑰ 현장실습선도기업	+5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을 가점으로 인정하며, 최근 3년은 '연도'를 기준으로 함
예) 공고일이 '25.3.24인 경우, 2022.1.1.~2025.3.24.까지의 실적을 인정함

4. 선정 절차

가. **심사 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실시

① **1차(서류심사)** :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반영,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현장심사 대상 선정

② **2차(현장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 심사(기준점수 이상인 재인증 기관 및 기업 제외)

* HRD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나. **선정 기준** :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공·대기업·중소기업)** 총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취득

※ 단, 인적자원관리부문 240점 미만, 인적자원개발부문 360점 미만인 경우는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

5. 인증수여 및 인증혜택

가. **인증 수여** : 유효기간 3년('25~'28)의 인증서 수여

○ **(공공부문)** 교육부(총괄), 인사혁신처 2개 부처 공동명의로 인증서 수여

○ **(민간부문)** 고용노동부(총괄),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공동명의로 인증서 수여

나. **인증 혜택** : 인증서(패) 수여 외에 다양한 혜택 제공

○ **(공공부문)**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 최우수인증기관(4개 기관) 담당자 및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1개 기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간 동안(3년) 정기근로감독(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제1호) 면제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의 제2호(수시감독), 제3호(특별감독)에 따른 근로감독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조 제1항('23. 8. 1. 시행)에 따라, 본 인증으로 인한 정기근로감독 면제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증을 신청한 모든 기관 대상으로, 심사 종합의견과 향후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기관별 피드백 리포트 제공 및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 지원

○ **(민간부문)**

부처별	주요내용	비 고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정기 근로 감독면제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공통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 시 대표자 가점(3점)	
	부문별 최고득점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 고용안정장려금(5점),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최대 10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시 가점(최대 1점)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 물품구매/일반용역 적격심사,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가(각 1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심사 신인도 평가(0.5점)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우대(보증료 0.2%p 감면, 심사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인증제 참여 심사 가점(최대 5점)	공통
기 타	인증기관 사례 홍보	공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및 동판 활용	

※ 인증기관에 제공되는 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다. (공공부문) 희망기관 맞춤 컨설팅 : 인증 탈락기관 중 희망기관, 심사 결과 하위 득점기관 중 희망기관 등에 대해 인적자원개발 현황 진단·개선방안 제시 등 맞춤형 HRD 컨설팅 지원

라. 인증 취소 : 인증 이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 또는 발생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② 결격 기준(참고 1)에 해당하여, 인증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기관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①~②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신청 자격 박탈하며, 소급하여 인증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신청 자격 박탈

6. 향후 일정

○ 사업 공고일 및 접수 마감일 : '25. 3. 24.(월) ~ 5. 22.(목) 18:00

※ 마감일 이후 서류 제출 불가하며, 마감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기관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심사 및 인증기관 확정 : '25년 6 ~ 8월

○ 인증수여식 개최 : '25년 9월 중순 예정

7. 문의처 및 세부사항 안내

○ 제출서류 양식 및 사업 세부사항 안내 사이트

- (공공부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www.krivet.re.kr)
-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www.hrd4u.or.kr/hrdcert)

○ **(공공부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 인증사업 담당자

- ✉ 이메일: best-hrd@krivet.re.kr / ☎ 전화 : 044-415-3941

○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30개 지부·지사 직업능력개발부

- HRDK 고객센터 1644-8000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지부·지사 연락처는 참고4 참조

참고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결격 및 감점 기준

○ 인증 결격기준 및 감점기준

결격 기준 및 감점 기준

√ 최근 3년(공고일 기준) 이내

≪ 결격 기준 ≫

①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
⑦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⑧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여부 결정)

≪ 감점 기준 ≫

①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의견 송치 사실(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일반기업 건당 50점, 선취업후학습 기업은 건당 5점 감점
- 단, 결격 기준 ⑦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결격 기준에 해당함

○ HRD 또는 노동관계법의 범위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①근로기준법 ②최저임금법 ③남녀고용평등법 ④임금채권보장법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⑥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⑦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⑧근로복지기본법 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⑫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⑮산업안전보건법 ⑯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⑰고용보험법 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⑲중대재해처벌법

참고 2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심사 기준

부문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A. 인적자원관리 (400)	A.1 인사관리기반 (90)	A.1.1 인사기획 및 전략(40)	A.1.1.1 기관 경영에 근거한 인사관리체계 수립	10
			A.1.1.2 역량기반 인사관리 기획	10
			A.1.1.3 인사에 관한 정부시책 반영	20
		A.1.2 인력계획(50)	A.1.2.1 역량모델 계획 수립 및 운영	20
			A.1.2.2 부서별 인력 수요 조사	20
			A.1.2.3 다원화된 인사관리 방법	10
	A.2 인적자원 관리체제 구축과 운영 (140)	A.2.1 채용(40)	A.2.1.1 역량중심 채용	20
			A.2.1.2 채용 방식의 다양성	20
		A.2.2 인사평가(20)	A.2.2.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의 정립	20
		A.2.3 배치 및 인사이동(40)	A.2.3.1 배치이동의 상세 경로 설정	20
			A.2.3.2 체계적인 경력관리 시행	20
		A.2.4 승진(40)	A.2.4.1 개인의 업적 및 역량에 기반한 승진	20
			A.2.4.2 승진제도의 합리성	20
	A.3 성과목표 관리 (80)	A.3.1 목표 수립 및 관리(40)	A.3.1.1 조직과 개인 목표의 연계성	10
			A.3.1.2 설정목표의 공유성	10
			A.3.1.3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20
		A.3.2 결과 공개 및 환류(40)	A.3.2.1 성과평가 결과 정보의 공개	20
			A.3.2.2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에 대한 평가결과의 반영	20
	A.4 역량개발 제도운영 (90)	A.4.1 경력개발 체제(50)	A.4.1.1 역량중심의 경력관리 시행	30
			A.4.1.2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상체제 시행	20
		A.4.2 능력개발 인프라(40)	A.4.2.1 개인의 자기개발 노력 유도 및 동기 부여	20
			A.4.2.2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경로의 다양화 노력	20
B. 인적자원개발 (600)	B.1 기획 및 인프라 (200)	B.1.1 기획(120)	B.1.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30
			B.1.1.2 체계적인 인재육성 계획 수립	50
			B.1.1.3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 수립	40
		B.1.2 인프라(80)	B.1.2.1 HRM과 HRD의 연계 정도	50
			B.1.2.2 새로운 교육방식 및 교수기법 도입 노력	30
	B.2 운영 (300)	B.2.1 학습조직화 (100)	B.2.1.1 현업부서 내 교육학습 실행 정도	40
			B.2.1.2 학습조직 활성화 정도	30
			B.2.1.3 집합교육 이외의 학습활동 정도	30
		B.2.2 교육훈련 참여 및 자율성(80)	B.2.2.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성	40
			B.2.2.2 개인 스스로 교육학습 실행정도	40
		B.2.3 인적자원개발 투자(120)	B.2.3.1 1인당 연간 교육훈련 비용	60
			B.2.3.2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시간	60
	B.3 평가 (100)	B.3.1 결과 및 피드백(100)	B.3.1.1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 역량개발 계획 실적	50
			B.3.1.2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효과	30
			B.3.1.3 인적자원개발의 조직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	20
합계				1,000

참고 3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심사 기준

【 대기업 부문 】

부문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비고
A. 인적자원 관리 (400점)	A.1 기획 인프라 (150)	A.1.1 인사계획	A.1.1.1 회사비전(전략)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계획 수립의 적절성	30	정성
			A.1.1.2 인사계획에 구성원 참여 수준	20	정성
			A.1.1.3 인사에 관한 정부 시책 반영의 적절성	10	정량
		A.1.2 인프라 구축	A.1.2.1 인사 관련 사내규정 활용 수준	20	정성
			A.1.2.2 선발/평가시 능력중심 역량측정 도구개발 및 활용 수준	30	정성
			A.1.2.3 e-HRM시스템 구축정도(e-HR 통합시스템 포함)	20	정성
			A.1.2.4 노사관계의 파트너십 구축 정도	20	정성
	A.2 활용 (160)	A.2.1 채용	A.2.1.1 부서별 능력중심 인력 수요조사의 적절성	30	정성
			A.2.1.2 능력중심 채용절차의 적절성	30	정성
			A.2.1.3 채용인력 유지율	30	정량
		A.2.2 직원관리	A.2.2.1 능력중심 핵심인재관리 수준	20	정성
			A.2.2.2 능력중심의 인재 육성경로 활용 수준	30	정성
			A.2.2.3 퇴직지원제도의 적절성	20	정성
	A.3 평가보상 (90)	A.3.1 성과평가	A.3.1.1 평가정보 공개 및 피드백 정도	20	정성
			A.3.1.2 조직의 목표와 개인 목표와의 연계정도	30	정성
			A.3.1.3 평가결과에 따른 역량개발 연계정도	10	정성
		A.3.2 승진보상	A.3.2.1 능력중심 승진제도의 공정성	10	정성
			A.3.2.2 성과평가에 기반한 보상제 시행	10	정성
			A.3.2.3 복리후생제도 다양성	10	정성
	가점 : 각 +3점(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특성화고 체결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참여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여가친화인증사업 인증기업,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기업) 각 +5점(가족친화인증기업, 일학습병행 실시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기업자격 정부인정 사업 참여기업) 감점 : 건당 –50점(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				
B. 인적자원 개발 (600점)	B.1 기획 인프라 (290)	B.1.1 HRD기획	B.1.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CEO의 의지	30	정성
			B.1.1.2 HRD 활동과 기업 비전/미션/사업전략의 연계성	30	정성
			B.1.1.3 중장기 능력중심 인재육성체계 수립의 적절성	30	정성
			B.1.1.4 정기적인 HRD 요구 분석 및 반영 수준	20	정성
		B.1.2 인프라 구축	B.1.2.1 HRM과 HRD 연계성	30	정성
			B.1.2.2 온·오프라인 교육인프라 활용 수준	20	정성
			B.1.2.3 HRD 조직/담당자 활용 수준	20	정성
			B.1.2.4 능력중심 역량정의 및 활용 수준	30	정성
			B.1.2.5 e-HRD시스템 구축정도	20	정성
		B.1.3 인적자원개발투자	B.1.3.1 1인당 연간 교육훈련비용	30	정량
			B.1.3.2 1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	30	정량
	B.2 운영 (200)	B.2.1 학습조직화	B.2.1.1 학습조직 활동 설계의 체계성	30	정성
			B.2.1.2 학습조직 활동의 활성화 수준	30	정성
		B.2.2 교육 프로그램	B.2.2.1 능력중심의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도	30	정성
			B.2.2.2 강사전문성 및 관리 수준	10	정성
			B.2.2.3 구성원의 교육훈련 참여 자율성	30	정성
			B.2.2.4 학습활동 모니터링 및 촉진 수준	20	정성
		B.2.3 경력개발	B.2.3.1 능력중심의 경력설계지원 수준	30	정성
			B.2.3.2 개인 경력개발 계획 관리 수준	20	정성
	B.3 결과 (110)	B.3.1 평가 및 피드백	B.3.1.1 체계적인 평가방법의 활용 수준	30	정성
			B.3.1.2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효과	30	정성
		B.3.2 기여도	B.3.2.1 교육목표 대비 실적	20	정량
			B.3.2.2 인적자원개발의 조직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	20	정성
		B.3.3 우수사례	B.3.3.1 기업의 특·장점 및 타기업과의 차별성	10	정성

【 중소기업 부문 】

부문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비고
A. 인적자원 관리 (400점)	A.1 기획 인프라 (140)	A.1.1 인사계획	A.1.1.1 회사비전(전략)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계획 수립의 적절성	50	정성
		A.1.2 인프라구축	A.1.2.1 인사 관련 사내규정 활용 수준	30	정성
			A.1.2.2 능력중심의 선발/평가기준 정립 수준	30	정성
			A.1.2.3 노사관계의 파트너십 구축 정도	30	정성
	A.2 활용 (140)	A.2.1 채용	A.2.1.1 능력중심 채용절차의 적절성	40	정성
			A.2.1.2 채용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 정도	50	정성
		A.2.2 직원관리	A.2.2.1 능력중심의 인재 육성경로 활용 수준	50	정성
	A.3 평가보상 (120)	A.3.1 성과평가	A.3.1.1 성과평가체계의 적절성	30	정성
			A.3.1.2 조직의 목표와 개인 목표와의 연계정도	30	정성
		A.3.2 승진보상	A.3.2.1 능력중심 평가결과에 따른 승진 및 보상제 시행 수준	30	정성
			A.3.2.2 복리후생제도 다양성	30	정성
	가점 : 각 +3점(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특성화고 체결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참여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기능한국인 운영기업, 여가친화인증사업 인증기업, 능력개발 클리닉 참여기업,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기업) 각 +5점(가족친화인증기업, 일학습병행 실시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기업 자격 정부인정 사업 참여기업, NCS기반 기업활용 우수기업) 감점 : 건당 –50점(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				
B. 인적자원 개발 (600점)	B.1 기획 인프라 (290)	B.1.1 HRD기획	B.1.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CEO의 의지	50	정성
			B.1.1.2 HRD 활동과 기업 비전/미션/사업전략의 연계성	40	정성
			B.1.1.3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구성원 공유 수준	40	정성
		B.1.2 인프라 구축	B.1.2.1 교육훈련결과와 인사고과의 연계성	30	정성
			B.1.2.2 온·오프라인 교육인프라 활용 수준	20	정성
			B.1.2.3 HRD 담당자 활용 수준	30	정성
		B.1.3 HRD 투자	B.1.3.1 1인당 연간 교육훈련비용	40	정량
			B.1.3.2 1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	40	정량
	B.2 운영 (200)	B.2.1 학습조직화	B.2.1.1 학습조직 활동 설계의 체계성	40	정성
			B.2.1.2 학습조직 활동의 활성화 수준	40	정성
		B.2.2 교육프로그램	B.2.2.1 능력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정도	40	정성
			B.2.2.2 학습활동 모니터링 및 촉진 수준	40	정성
		B.2.3 경력개발	B.2.3.1 능력중심 인재 육성경로의 체계성	40	정성
	B.3 결과 (110)	B.3.1 평가 및 피드백	B.3.1.1 교육훈련 평가기준 수립 여부 및 실행 수준	30	정성
			B.3.1.2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노력	30	정성
		B.3.2 기여도	B.3.2.1 인적자원개발의 조직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	40	정성
		B.3.3 우수사례	B.3.3.1 기업의 특·장점 및 타기업과의 차별성	10	정성

【 선취업후학습 기업 부문 】

평가영역	평가항목/지표	배점	비고
고용 (27)	1.1 선취업 근로자 비중	6	정량
	1.2 선취업 근로자 고용유지율	7	정량
	1.3 선취업 근로자 고용증가율	7	정량
	1.4 고졸 채용 활성화 노력	7	정성
지원 (21)	2.1 CEO의 의지	7	정성
	2.2 후학습률	7	정량
	2.3 근로자의 후학습 지원노력	7	정성
인사보상 (20)	3.1 후학습 후 인사 우대노력	12	정성
	3.2 후학습 후 보상 노력	8	정성
조직문화 (10)	4.1 선취업-후학습 지원분위기	5	정성
	4.2 고졸취업, 선취업-후학습 관련 직원대표회의 또는 노조와의 협의	5	정성
육성 (10)	5.1 선취업 근로자 육성로드맵 여부	5	정성
	5.2 선취업 근로자 경력관리	5	정성
성과 (12)	6.1 선취업-후학습 도입에 따른 기업기여도	5	정성
	6.2 선취업 근로자 직무·조직만족도 향상	5	정성
	6.3 기업의 특·장점 및 타기업과의 차별성	2	정성
합계		**100**	

가점 : 아래 가점 사업 중 택1(최고 득점 5점)

각 +5점 일학습병행 실시기업, 현장실습선도기업

각 +2점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한민국일자리 으뜸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과정평가형자격 참여기업, 기업자격 정부인정 사업 참여기업, NCS 기업활용 우수기업,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기능한국인 운영 기업, 여가친화인증사업 인증기업, 능력개발 클리닉 참여기업,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기업

감점 : -5점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

참고 4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30개 지부·지사 직업능력개발부

기관명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02-2137-0450
서울서부지사	**서울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02-2024-1734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02-6907-7175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02-2161-9118
강원지사	**강원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248-8504
강원동부지사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033-650-5744
경인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화성시, 안산시	031-249-1271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032-820-8608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31-850-9117
경기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031-750-6251
경기남부지사	**경기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031-615-9045
경기서부지사	**경기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시흥시	032-719-0804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1-620-1977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055-212-7218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052-220-3234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청도군	053-580-2316
경북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054-840-3013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30-3231
경북서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054-713-3002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062-970-1732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063-210-9213
전남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061-720-8521
전남서부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강진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061-288-3314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064-729-0723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063-731-5506
대전지역본부	**대전**,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042-580-9112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043-279-9012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홍성군	041-620-7656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044-410-8013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722-4312